

환경개선부담금 안내

□ 부과대상: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
(`12.4이후 제작된 유로5·6, 저공해차량 등 제외)

□ 부과 : 1년에 2회

구 분	부과기준일	부과기간	납 기
상반기	매년 6월 30일	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	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하반기	매년 12월 31일	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	익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

□ 납부의무자

- 부과기준일(6.30, 12.31.)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에 부과
- 차량말소 및 명의 이전의 경우,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
- ※ 납기 내 미납시 부과금액에 추가로 **3%의 가산금**이 붙게 되며, 독촉고지서 발송 이후에도 미납 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부담금 용도

- 납부하신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·수질 분야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.

□ 납부 방법 안내

○ 납부방법

- ① 간단e납부 :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, 인터넷뱅킹, 위택스 등에서 통장,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납부
- ② 부산시 세외수입 납부 카드결제
 - ARS 납부 : ☎ 1544-1414(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)
 - 인터넷 납부 : 부산 사이버지방세청(<http://etax.busan.go.kr>)
- ③ 가상계좌 납부 : 고지서에 기재된 부산은행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

□ 문 의 : 북구청 환경위생과(☎ 309-4386)